

본회주최 전국규모대회 MVP 선정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주최 전국규모대회(이하"대회"라 칭함)에서우수선수에 대하여 본회 회장 표창을 수여함에 있어 공정하고, 합리적으로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본회가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란, 회장배전국우슈쿱수권대회, 전국 학생우슈선수권대회, 전국산타/태극권대회 및 그외 본회가 승인한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스폰서쉽 전국규모대회를 말한다.
- ②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시상구분) 본회 전국규모대회 시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.

- ① 대회 최우수선수상 1명(아래 해당자들 중 1명 선정)
 - 산타는 16명이상 출전한 체급 중 1위자 들
 - 투로는 6명이상 출전한 세부종목 중 1위자 들
- ② 우수선수상 2명(남1명, 여1명)
 - 대회에서 경기력이 크게 향상된 선수(등위자) 중 타의 귀감이 되는 경기를 한 자.

제4조(시상방법) 위 제3조 ①,② 항의 시상방법은 상장 및 상패 혹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수여한다.

제5조(선정위원) 본회 전국규모대회 시상대상자 선정위원은 심판위원장, 총심판장, 심판장2명, 경기위원장으로 선정위원이 추천하면 해당대회 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(2013.07.13)로부터 시행한다